

2025년 귀속 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 제출 안내

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,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("외국법인 연락사무소")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 1회 「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(법인세법 §94의2, 동법 시행령 §133의2).

<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개요 >

□ 제출 대상

-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

* 비거주자(외국법인)가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(외국환거래규정§9-33)를 하고,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 발급(법인세법 시행령§154)

□ 제출 내용

- 연락사무소 기본사항, 임차·직원·운영자금 현황,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 및 국내투자 법인·지점 현황 등을 작성(매년 12월 31일 기준)

□ 제출 기한

- 제출대상기간(1월 1일부터 12월 31일)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

※ 올해는 '25.1.1.~'25.12.31. 기간의 현황자료를 **'26.2.10.(화)까지 제출**

□ 제출 방법(전자신고 또는 직접 제출)

- 전자신고 :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 > 로그인 > 증명·등록·신청 > 소득·법인세 관련 신청·신고 >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
- 서면으로 작성한 현황명세서를 연락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

□ 미제출 시 불이익

-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, 명령 위반 시 **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 부과

◆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> 국세정책/제도 > 국제조세정보 > 주요서식 > '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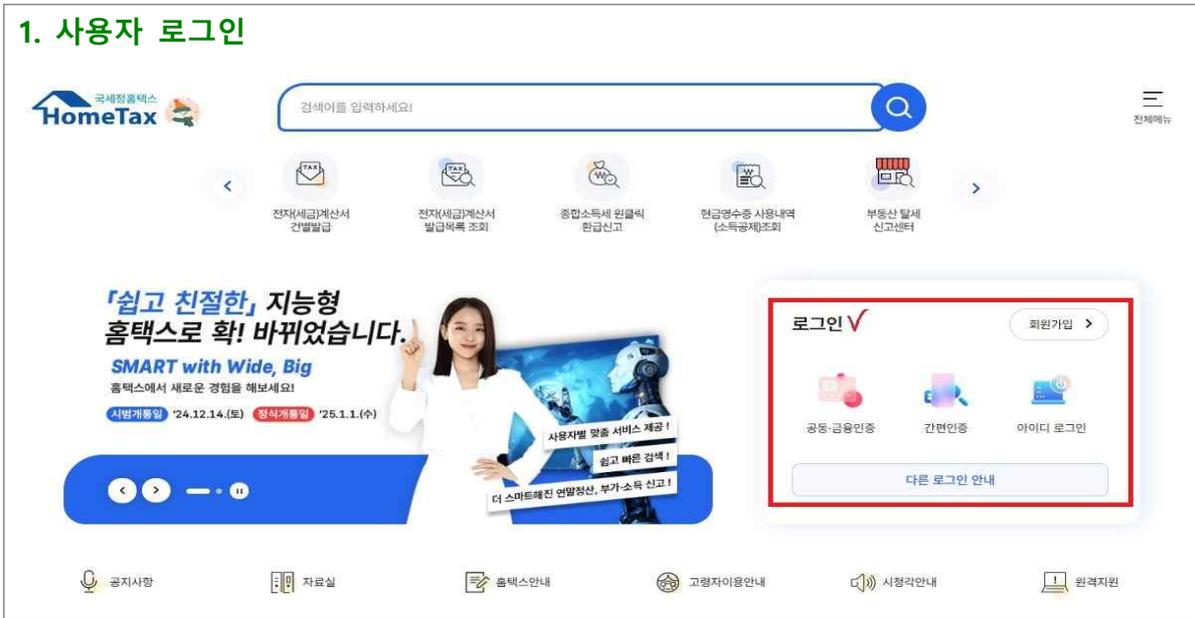
「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 홈택스 제출하세요

□ 홈택스 전자신고 작성 방법 (“회원가입” 필요)

[1] 홈택스 접속	•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[2] 사용자 로그인	• ①공동·금융인증 ②간편인증 ③아이디 중 한가지 방법으로 로그인*합니다. * 세무대리인은 공동·금융인증,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고
[3] 작성화면 이동	• [증명·등록·신청] ⇨ [소득·법인세 관련 신청·신고] ⇨ [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] 메뉴로 이동하여 [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작성하기]를 클릭합니다.
[4] 신고서 작성	•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각 항목별로 작성합니다.
01. 기본정보입력	• 작성할 신고서의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.
02. 임차·직원·운영자금 현황	• 연락사무소의 직원, 운영자금 현황 등 상세내역을 입력합니다.
03.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 현황	• 신고대상기간 동안 외국법인 본점의 전체 국내거래 금액 합계 및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입력합니다.
04. 본점의 국내투자 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	•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투자법인 및 국내 지점이 있는 경우 구분하여 입력합니다.
05. 계산서·세금계산서·신용카드 등 수취금액	• 신고대상기간의 매입금액 중 계산서,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.
[5] 신고서 작성완료	• 작성한 신고서의 오류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신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.
[6] 신고서 제출	• 작성한 신고서를 국세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[7] 접수증 확인	• 전송한 결과에 대한 접수증을 확인합니다.

□ 홈택스 「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」 작성 페이지 이동 경로

1. 사용자 로그인



2. [증명·등록·신청] ⇒ [소득·법인세 관련 신청·신고] ⇒ [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]



3. [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작성하기]를 클릭

